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00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민철·김병주·홍성국

이원택 · 최혜영 · 김남국

임호선 · 이수진 · 이용우

장철민 · 주철현 · 신현영

한준호 · 임오경 · 정청래

장경태 · 오영환 · 민형배

이성만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78조의7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8조의7 중 "명기"를 "명확하게 기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의7(국회에 대한 보고) 행	제78조의7(국회에 대한 보고) -
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	
경영평가, 제78조의2에 따른 경	
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	
한 조치, 제78조의3에 따른 해	
산 요구 등을 <u>명기</u> 한 지방공기	<u>명확하게 기록</u> -
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	
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	
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	
에 제출하여야 한다.	